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6	관리 부서 기획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의 정관 및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본 대학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학칙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직제 규정에 따른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직 제

제 1 절 총 장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괄하며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총장은 본 대학 정관 및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임면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③ 총장은 교외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을 위해 관련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총장실 산하기구) ① 총장직속으로 비서실을 두며,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제 2 절 행정부서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사무처를 두며, 각 처에 처장의 보직을 보한다.

② 보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회수는 제한이 없다.

③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각 부서에 부처장 및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교무처장은 학과장을 겸보하고 학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6	관리 부서 기획처

⑤ 각 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제7조(교무처) 교무처에 교무팀, 입학관리팀, 전공심화팀을 둔다.

제8조(학생처) 학생처에 학생지원팀을 둔다.

제9조(산학협력처)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팀과 현장실습팀을 둔다.

제10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홍보팀, 대학평가팀을 둔다.

제11조(사무처) 사무처에 총무팀, 회계팀, 전산팀을 둔다.

제12조(한시과업 조직) 총장은 대학 평가 또는 발전계획 추진 등 특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의한 조직 외에 특별 사업팀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팀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절 부속·부설기관

제13조(부속·부설기관) ①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제96조에 의거하여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의 부속기관에 도서관, 지역간호사업소,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서울 Sim-TEC, 학생지도상담센터, 진로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성과관리센터, 교양교육센터, 비교과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방송국, 학보사를 두고, 부설 기관으로 학교기업,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센터를 둔다.

③ 각 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각 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이나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단, 특별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⑤ 부속·부설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4조(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도서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6	관리 부서	기획처

③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서를 두며,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보하고, 사서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둔다.

제15조(지역간호사업소) ① 지역간호사업소에 소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한다.

제16조(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제17조(서울 Sim-Tec) 서울Sim-Tec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한다.

제18조(학생지도상담센터) ① 학생지도상담센터에 소장과 운영위원 및 학생생활상담 지원 전문가를 둔다.

②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학생처장이 겸보하며,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학생생활상담 지도 전문가는 교직원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보하되, 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19조(진로지원센터) ① 진로지원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중에서 보한다.

제20조(취·창업 지원센터) ① 취·창업 지원센터에 센터장, 운영위원,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외부 전문가, 학생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성과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교양교육센터) 교양교육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직원, 조교로 보한다.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6	관리 부서 기획처

제23조(비교과지원센터) 비교과지원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직원, 조교로 보한다.

제24조(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센터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직원, 조교로 보한다.

제25조(신문방송국) 신문방송국에 주간교수 및 운영위원을 두며, 주간교수는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위원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제26조(학교기업) ① 본 대학의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활성화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학교기업에 기업장 및 시설장을 두며, 기업장은 교무위원 또는 전임교원이 겸보한다.
 ③ 학교기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원장 및 운영위원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운영위원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② 평생교육원에는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③ 평생교육원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둔다.

제28조(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에 센터장, 실무위원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실무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보한다.

제 4 절 산학협력단

제26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처장이 겸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5/6	관리 부서	기획처

제 5 절 위원회

제27조(위원회) ①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절 기타

제28조(기타 기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제 규정	문서번호	3-1-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6/6	관리 부서	기획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